

제340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
제 1 차 문 화 환 경 위 원 회
2 0 2 3 . 6 . 1 5 . (목)

「경상북도 태권도 진흥 및 지원에 관한
조례안」

검 토 보 고 서

의안번호 : 272
제출일자 : 2023. 5. 31.
회부일자 : 2023. 6. 2.



문 화 환 경 위 원 회

수석전문위원 김성태

「경상북도 태권도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」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안 자 : 최병준 의원 외 59명

2. 제안 이유

- 경북은 태권도 역사의 중심지로서 그 위상을 보다 강화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음. 특히 도내 태권도 유품·유단자는 35만여 명에 달하고 있음.
- 이에 태권도 진흥 및 지원에 관한 도 차원의 조례 제정을 통해 경상북도민의 자긍심 고취와 함께 태권도를 연계한 지역관광산업 발전 등에 이바지 하고자 함.

3. 주요 내용

- 가. 태권도 진흥 및 지원에 관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
(안 제3조)
- 나. 경상북도 태권도 진흥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을 수립·시행하도록 규정함(안 제4조)
- 다. 태권도와 관련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
(안 제5조)

라. 태권도 교육 관련 콘텐츠 개발 및 보급 지원 등의 사업을 규정함(안 제6조)

마. 태권도와 관련된 홍보 및 태권도의 날 행사와 관련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7조)

4. 참고사항

- 예산수반(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) : 붙임
- 법제심사(입법정책담당관실) : 붙임
- 규제개혁 심사(법무혁신담당관실) : 해당하지 않음
- 부패영향평가(감사관실) : 부패 유발요인 없음
- 해당부서 의견(체육진흥과) : 의견없음
- 입법예고기간 : 2023년 6월 5일 ~ 6월 10일
- 관계법령 : 「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, 제3조, 제7조
「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조

5. 검토 의견

□ 본 조례안의 제정 배경을 살펴보면

- 「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」에서 국기(國技)¹⁾인 태권도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부과하고 있는 바,
- 태권도 진흥 및 지원에 관한 도 차원의 조례 제정을 통해 경상북도민의 자긍심 고취와 함께 태권도를 연계한 지역관광산업 발전 등에 이바지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판단됩니다.
- 타 시·도의 태권도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사례를 살펴보면, 전라북도(2015.10.12.), 서울특별시(2021.9.30.), 경기도(2023.3.6.) 등 3개 시·도에서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.

□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

- 안 제1조와 안 제2조는 본 조례안의 ‘목적’과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‘용어’를 정의하고 있으며²⁾,
- 안 제3조는 태권도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기반 조성³⁾과 태권도 교육 기회 확대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 규정입니다.

1) 정부는 태권도 종주국으로서의 위상 강화를 위하여 「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」을 별도로 제정(2007.12.21.) 하고, ‘대한민국의 국기(國技)는 태권도로 한다’는 조문을 신설함(2018.4.17.)

2) 「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서 사용한 용어를 준용하도록 하여 자치법규의 해석과 적용상의 혼란을 예방하도록 함.

[도지사의 책무]

「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」

제3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태권도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, 국민의 자발적인 태권도 활동을 보호하여야 한다.

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태권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기회의 확대에 노력하여야 한다.

- 안 제4조는 정책목표와 추진 방향, 태권도 교육 활성화 방안, 태권도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 및 지원 등을 포함한 '경상북도 태권도 진흥 및 지원계획'의 수립·시행 규정으로 태권도 진흥 및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됩니다.
- 다만, 「국민체육진흥법」 제4조제2항3)에 따른 체육진흥 계획과 상호연계 될 수 있도록 조문에 명시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.
- 안 제5조는 효율적인 진흥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입니다.
- 안 제6조는 태권도 문화·관광·교육 관련 콘텐츠 개발 및 보급, 우수 선수·지도자 및 태권도 팀의 육성 및 지원, 태권도 시설 조성, 태권도 국제 조직 기반 구축 및 국제 교류 지원 등 태권도 진흥 및 지원을 위하여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를 규정하고, 이 사업을 추진하는 시·군 및 단체 등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조례의 취지와 입법목적에 달성하기위한 조치로 보입니다.

3) 「국민체육진흥법」 제4조(기본 시책의 수립 등)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기본 시책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체육 진흥 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[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]

제8조(태권도단체 및 태권도시설의 지원 등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태권도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태권도단체와 태권도시설에 대하여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- 안 제7조는 태권도의 진흥을 위하여 지역 행사 연계, 온·오프라인 매체 활용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홍보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태권도에 대한 도민의 관심 제고와 저변 확대를 위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.
- 안 제8조는 태권도 진흥 및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또는 단체에게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.

□ 종합 의견

- 태권도는 대한민국에서 창안된 국기(國技)로서 「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」 및 「국민체육진흥법」을 근거로 태권도의 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본 조례안은 경북도 차원의 태권도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적극적·안정적으로 추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조례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됩니다.
- 또한, 최근 태권도는 초창기의 무도 형식을 넘어 스포츠, 예술 등으로 그 영역을 넓혀가면서 태권도 문화, 관광, 교육 등 다각도의 콘텐츠 발굴이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⁴⁾.

4) 2018년 4월 17일 태권도의 국기(國技)지정과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'태권도의 문화콘텐츠화'를 선정하여 핵심 정책과제로 추진하는 등 태권도의 제도약을 위한 정책사업이 추진되어 왔음.

- 이에, 본 조례제정으로 경북도의 태권도 진흥 사업이 활성화 되고 태권도를 연계한 지역 관광산업의 발전 등에 이바지 할 수 있다는 점과 조례안의 주요 내용 또한 관련법령에 부합하고 있고,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이견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전반적으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.

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

- 붙임 1. 경상북도 태권도 단체 현황
- 붙임 2. 태권도 대회 개최 현황(2022년)

□ 경상북도태권도협회 조직 현황

- 임 원: 고문 6명, 회장 1명, 부회장 6명, 이사 19명, 감사 2명
- 시군협회: 21개 지부 ※지부 미구성: 영양, 울진
- 회원도장: 530개 도장(23개 시군)
- 등 록 팀: 총 39팀(초등9, 중등 11, 고등 8, 대학8 , 실업 3)
- 각종위원회: 8개(경기발전, 회원복지, 도장심사, 스포츠, 인사, 도장지원특별, 심사평가감독, 기술전문위원회)

□ 학교운동부 등록 현황

(2022년 기준, 단위: 명)

순	시군명	총계	초			중			고		
			합계	남	여	합계	남	여	합계	남	여
계		239	63	45	18	98	70	28	78	53	25
1	포항시	50	7	5	2	22	14	8	21	10	11
2	경주시	32	9	7	2	13	13		10	10	
3	김천시	19	10	6	4	9	9				
4	구미시	37	8	5	3	9	6	3	20	13	7
5	영천시	19	3	3		8	8		8	8	
6	경산시	23				11	8	3	12	5	7
7	청도군	21	12	9	3	9		9			
8	고령군	17	4	4		6	6		7	7	
9	성주군	21	10	6	4	11	6	5			

□ 대학팀 등록 현황

(2022년 기준, 단위: 명)

구분	지역명	학교명	총계	선수		
				합계	남	여
총계(8개팀)			118	105	66	39
1	포항시	포항대	1		1	
2	경산시	대경대	26		16	10
3	경산시	영남대	1		0	1
4	구미시	경운대	37		26	11
5	경주시	동국대	1		0	1
6	경산시	경일대	23		12	11
7	안동시	가톨릭상지대	3		3	0
8	영주시	경북전문대	13		8	5

□ 실업팀 등록 현황

(2022년 기준, 단위: 명)

구분	지역명	소속	선수		
			계	남	여
합계(3개 팀)			23	11	12
1	포항시	포항시 체육회	5	5	0
2	영천시	영천시청	12	6	6
3	성주군	성주군청	6	0	6

담당	구분	시군	대회명	개최시기	최초 예상인원 (최종참가 인원)	개최장소	주최	주관
엘리트	전국	경주	화랑대기 전국 태권도대회	12.10. ~ 12.11.	3,000	경주시 일원	경주시, 경주시 태권도협회	경주시 태권도협회
엘리트	전국	안동	제52회 협회장기 전국단체대항 태권도대회	5.10. ~ 5.22.	3,300	안동체육관	대한 태권도협회	경상북도 태권도협회
엘리트	전국	영천	독도수호 태권도대회	11.5. ~ 11.7.	2,300	영천체육관	경북 태권도협회	경북 태권도협회, 영천시체육회
엘리트	전국	문경	국방부장관기 전국단체대항 태권도대회	9.15. ~ 9.22.	3,000	문경시 국군체육부대	국방부, 대한 태권도협회	경상북도 태권도협회
엘리트	전국	상주	경상북도지사기 태권도대회	9.3. ~ 9.5.	1,500	상주시 실내체육관	경상북도 태권도협회	상주시 태권도협회
생활	전국	경산	2022년 한국초등 태권도연맹 회장기 대회	7.23. ~ 7.27.	2,500	경산 실내체육관	한국초등학교 태권도연맹	경산시 체육회, 경북 태권도협회, 경산시 태권도협회
생활	도단위	문경	제21회 경상북도 협회장기 태권도대회	7.9. ~ 7.11.	1,000	문경 실내체육관	경상북도 태권도협회	경상북도. 문경시 태권도협회